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7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7.

3. 회부연월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인력·판매·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 -----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1. (현행과 같음)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4. (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u><신 설></u>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u>활용 지원</u> 7. <u>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u> 8. (현행 제6호와 같음)
--	---

최근 생산·유통·판매·홍보 등 사업체 운영의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여부 및 활용 수준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국제정세 불안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

반면, 소상공인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련 정부 지원 역시 법적 근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¹⁾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조직·예산 등의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국회의원 오세희 보도자료, “소상공인·중소기업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받는다”, 2025.3.17.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음.²⁾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2025년 예산 23억 4,500만원)³⁾ 및 ‘소공인특화지원(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2025년 예산 84억원)⁴⁾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추가로 신규사업을 수행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임.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녹색경영 실현 등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화 지원도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2)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4.8.

3)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권정보의 빅데이터 플랫폼화로 AI 기반의 지역·업종별 실시간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됨.

4)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됨.

5)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